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45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신정훈·장종태·박해철

허성무 • 부승찬 • 김영호

이재관 • 양부남 • 유동수

윤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관련한 비용을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사업과 관련한 결산에 대한 감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결산 검사의 방식과 범위가 다르고, 심지어 결산 검사 방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 정부 재정의 누수 우려와 함께, 정부 재정 집행의 검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족과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한 효율성 검증 미비에 대한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방보조금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및 사후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는 그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결산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예산 집행에 관 한 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일관성 결여에 따른 규제 차별 문제가 제 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 예산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사무·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사무 위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		
	정한 외부의 감사인(「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제7호의 감사인을		
	말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		
	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		
	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구체적인 대상 사		
	무·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